■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7.29>

포상금지급신청서

(앞쪽)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신고 또는 고발한 범법행위의 내용	신고일자	
	신고·고발기관	
	범법행위자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장소	
포상금액	※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포상금 배분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수령 계좌번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포상금 안내

※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신청	→	접 수	→	서류 심사	→	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	포상금 지급 결정	→	포상금 지급
신청인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신청인